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입소·이용자가 감소하였음에도 종사자는 지속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립되어 있는 특정목적사업예산(시설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을 당초 설정한 적립 목적이 아닌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쌓여있는 적립금이 있어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종사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대규모 재난(감염병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목적사업예산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관 운영의 고용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사용 제한에 예외규정 도입

-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던 것을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귀책이 없음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정목적사업 예산) ①·② (생 략) <u>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u>	제9조(특정목적사업 예산)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 의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장기 요양기관의 장의 귀책이 없음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u>